
2022학년도 한성대학교
스마트팩토리컨설팅학과
계약학과(편입학) 모집요강(추가모집)



1

스마트팩토리컨설팅학과(계약학과) 안내

학위과정	입학구분	학과명	학위명	모집인원	비고
학사	편입학	스마트팩토리컨설팅학과	공학사	5*	재교육형 (3~4학년)

※ 모집인원은 최초모집 등록결과에 따라 늘어날 수 있음.

- 수업운영 : 4학기(2년), 주중 비대면 수업, 토요일 1일 대면 수업
- 수업장소 : (대면수업) 한성대학교 (마지막 페이지 위치 및 교통안내 참조)
- 고등교육법에 의거 학사학위 취득(한성대학교총장 명의)
- 졸업요건 : 최소 130학점 이수(전적대학 학점을 65학점까지 교양으로 인정)
 - 잔여 65학점 가운데 전공 60학점 이수
- 등록금 : 229.4만원 / 학기
 - (중소기업의 경우) 등록금의 85%는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15%는 민간(참여기업 및 참여학생)이 부담한다. 참여기업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 중견기업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의 경우, 등록금의 40%를 정부가 지원하며, 나머지 60%는 민간(참여기업 및 참여 학생)이 부담하되, 참여기업이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의 중견기업의 경우, 정부지원금은 없으며, 참여기업이 등록금의 50% 이상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참여 학생이 부담해야 한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 보조금의 지원 비율을 5% 상향한다. 단,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 보조금의 지원 비율을 10% 상향한다.
 1. 매학기 개시일 기준 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 포함)에 가입한 근로자
 2. 편입학일 기준 3년 이내 중소기업 특성화고 취업(산학)맞춤반 채용협약에 의하여 채용된 근로자
 3. 편입학일 기준 3년 이내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완료 과제에 참여한 근로자
 4. 계약학과 학위 과정을 졸업하고 상급 학위 과정으로 진학하는 근로자
 5.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혁신 선도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 입학금 : 16.4만원

2 지원자격

□ 기본자격 : 전문학사 학위가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 4년제 대학에서 2년(4학기) 이상 수료(예정)자
- ❖ 2,3년제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전문학사 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학사학위 과정자로서 70학점 이상 취득한 자
- ❖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세부 지원자격 :

- 참여기업: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계약학과에 소속 근로자를 참여시킨 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틀업,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
 -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기업 제외
 -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기업은 제외
 - ❖ 기업의 파산, 회생절차, 대표자 회신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은 제외
 - ❖ 최근 결산 기준 부채비율 50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잠식인 기업은 제외
 - ❖ 학위과정의 교육내용과 참여기업의 업종이 상호 관련성이 없는 기업은 제외
- 참여학생: 참여 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 참여 기업에서 학기 개시일 기준 6개월 이상 재직중인 자(단, 학기 개시일은 봄학기 3월 1일, 가을학기 9월 1일로 봄)
 - ❖ 중소(중견)기업에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대표자는 제외하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는 전문경영인은 포함
 - ❖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어야 하며, 만약 그러지 아니한 경우 근무 기간이 계약학과 운영 및 최소 의무근무 기간보다 장기간이어야 함
 - ❖ 학위과정의 교육내용과 소속기업의 업종 또는 수행하고 있는 직무가 상호 관련성이 없는 경우 제외

3 전형방법 및 일정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 선발기준 :

- 서류평가 점수 40%, 면접평가 점수 60% - 서류평가는 전적대학 성적 기준
- 서류평가 점수와 면접평가 점수를 합하여 총점 순위에 따라 선발
- 동점자의 경우 본교에서 정한 동점자 처리 기준에 의거하여 처리함
- 입학 구비서류 미제출이나 면접전형에 결시하는 경우 자동 불합격 처리됨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 제 15조(학생 및 기업 선발) 4항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선발함

1. 마이스터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
2.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대학연계 중소기업인력양성 사업” 참여자 또는 “기술사관 육성사업” 참여자
3. 중소기업 5년 이상 근속자
4.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에 의한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5.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뿌리기업”에 재직 중인 자
6. 청년장병진로도움 지원사업을 통해 취업한 전역 의무복무병 및 단기복무 간부

□ 전형일정 및 내용 :

	구분	일정	내용
학생 선발 일정	근로자(학생) 지원서류 접수	2022.07.18 ~ 2022.07.23 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방법 : 우편(또는 방문) 제출 (02876)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한성대학교 지선관 105호 스마트경영공학부 사무실 ■ 지원자 입학원서 포함 지원자 구비서류 일체 접수 ■ 전형료(6만원) 계좌 납부 기업 689-016254-04-882 한성대학교 (* 본인 명의 납부)
	면접고사	2022.07.30 13:00 부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심사 합격자만 응시 가능 ■ 오프라인 대면 면접
	합격자 발표	2022.08.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격자 개별 통지 ■ 합격증, 등록금 납부 통지서 발급
	등록금(입학금 포함) 납부	2022.08.10. ~ 2022.08.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체 : 산업체 또는 기관대표자명으로 납부 ■ 학생 : 등록금고지서 출력 후 가상계좌 납부
	추가 등록	2022.08.16. ~ 2022.08.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합격자에 한함
	개강	2022.08.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과별 해당 강의시간표에 준함 ■ 주중 온라인, 주말(토) 오프라인 수업

3 구비서류

- ① 계약학과 입학원서(본교 양식) 1부
 - ② 아래서류 중 해당서류만 제출
 - 4년제 대학 2학년 수료증명서 1부
 - 전문대학 졸업증명서 1부
 - 전문학사학위취득증명서 1부
 - 학사학위 학점인정증명서 1부
 - ③ 성적증명서 2부
 -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⑤ 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기업 신청서 및 입학 추천서 각 1부(【별지 제6호서식】)
 - 사업자등록증 1부.
 - 중소기업 확인서 1부. (sminfo.smba.go.kr에서 발급)
 - 중견기업 확인서 및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각 1부. (중견기업만 해당. 중견기업협회에서 발급)
 - 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 1부. (minwon.nhis.or.kr에서 발급)
 - 재직증명서 1부.
 -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1부. (4대보험 모두 가입, www.4insure.or.kr에서 발급)
 -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조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대체가능) 1부. (중소기업제작 6개월 증빙자료)
 - ⑥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1부 (참여기업이 법인일 경우 제출)
 - ⑦ 등록금 비율 확정 서류
 - ⑧ 법인 국세납세 증명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
 - ⑨ 최근 결산 재무제표
 - ⑩ 기업(신용)정보 서약서
 - ⑪ (해당자에 한함) 정부 보조금 지원 비율 상향 대상 여부 확인표 및 관련 서류
 - ⑫ (해당자에 한함) 우선 선발 대상 여부 확인표 및 관련 서류
- ※ 위의 서류는 타서류로 대체불가능,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서류여야 함

4 유의사항

① 입학 후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원에 의한 퇴직, 징계해고, 계약기간 만료 퇴직의 경우 입학 취소 또는 제적을 원칙으로 한다.

※ 단, 임금체불, 휴업, 사업장 이전,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한 자진 퇴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산업체 등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 필요 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잔여기간의 교육은 계약학과에서 맡는다. 다만 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 이상을 취득하거나, 1/2 미만 이

수했을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해야 한다.

② 학교는 아래의 서류를 통해 참여학생(학위 취득 후 의무근무 중인 자를 포함한다)의 재직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제 2호는 재학 중인 참여학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매학기 개시 전월의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영수부),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2. 매학기 개시일 기준 참여기업의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중견기업에 한함)

③ 전 과정 이수 시까지 휴학, 전과, 재입학, 복수전공, 부전공 불가(단, 군입대, 출산, 육아 휴직, 질병, 장기출장의 경우 최대 2학기 범위 내에서 휴학 가능)

④ 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재해 등으로 인해 수업 일수의 1/3 이상 수업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참여학생은 참여기업에서 근무상황이 바뀌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려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알리지 않는 경우, 해당학생의 입학を 취소할 수 있다.

⑥ 참여학생은 졸업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참여기업에서 근무할 의무가 있다.

⑦ 참여학생은 해당 학기를 시작일로 하여 의무 근로 기간 종료일까지 등록금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담보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매학기 대학에 제출해야한다. 개인신용문제로 인해 가입이 어려운 경우 입학을 취소한다.

⑧ 참여학생은 휴학 등에 따라 의무 근무기간 종료일이 연장되는 경우, 당초 제출한 보증보험증권을 연장한 기간만큼 갱신한 후 대학에 제출해야 한다.

⑨ 산업체에서 정부지원 외 등록금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하며, 산업체 부담금을 학생이 부담할 경우 해당 학생은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됨을 원칙으로 한다.

⑩ 제출서류 허위기재, 서류의 위조 또는 변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이 확인될 경우 계약 이후라도 취소될 수 있다.

⑪ 제출한 서류 및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 원서접수 시 추가합격 통보가 가능한 연락처를 기입하여야 하며, 연락처 입력 오류 및 누락으로 연락이 불가능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 질병 사고등으로 면접고사를 응시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형료를 환불하지 않으므로 입학원서 제출사항 및 자격요건을 신중히 확인한 후 전형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⑫ 취득학점 미달 및 제출서류 또는 입력사항의 허위기재나 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한 후에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

※ 입학이후 입시부정 사실 확인 시 입학취소 및 학적말소(해당업무 담당자의 과실로 인한 입시부정의 경우라도 취소될 수 있음)

2022학년도 한성대학교 입학원서

입학구분	계약학과(편입생)	지원학과	스마트팩토리컨설팅학과	(전공)
------	-----------	------	-------------	------

지원자 사 인 적 사 항	성명	(한글)	(영문)	성별	남 여	사 진 (3cm × 4cm)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출신	고등학교	년 월 일	고등학교(졸업)			
		검정고시	년 월 일 ()지구 합격			
	신학	전적대학	년 월 일	대학(교)			학과 입학
			년 월 일	대학(교)			학과 편입학
			년 월 일	대학(교)			학과 학년(졸업·예정· 수료·제적)
	최종 학 학 사	학과 계열	인문계열()		자연계열()		
		학위등록번호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주소	□□□-□□□□					
	주소 및 연 락 처	전화	() -	휴대폰	() -		E-mail
		근무처	직장명 (입사일)	(년 월 일)	직위		근무부서
			주소	□□□-□□□□			
	자격 증	취득일자		자격 및 면허증			발령처

본인은 귀 대학교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지원자 : (인) </div>	전형료 접수자 ※ (인)
한성대학교총장 귀하	

「중소기업 계약학과」 입학 추천서

성 명		생 년 월 일	
지 원 학 과		연 락 처	
근 무 부 서		재 직 기 간 (개 월)	(년 월 일 ~ 현재)
직 위		담 당 업 무	

<추천사유>

교육과정과 추천대상자의 직무 간 상호 연관성(현재 또는 향후)

학위과정 수료이후 추천대상자에 대해 기대하는 효과

기타 위 사람을 추천한 특별한 사유

위 사람을 2022학년도 한성대학교 「중소기업 계약학과」 입학희망자로 추천합니다.

- ※ 첨부 1. 재직증명서 1부
 2.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
 3.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조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대체가능) 1부

대표자 : (인)

한성대학교 총장 귀하

【등록금 부담 비율 확정 서류】

「중소기업 계약학과」 등록금 부담 비율

성 명		기 업 명	
등록금 부담비율 (100%)	정 부 보 조 비 율	민 간 부 담 금	
		참여기업 부담비율	참여학생 부담비율
	85%	%	%

※ 등록금(100%)에서 정부보조금 85%, 민간부담금 15%(참여기업 및 참여학생) 부담. 단, 참여기업이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함

위와 같이 등록금 부담비율 확정서류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한성대학교 총장 귀하

기업(신용)정보 관련 서약서

○ 당사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참여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 사업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신청일 현재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 상태인가? (징수유예는 제외)

(예, 아니오)

2. 신청일 현재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는가?

(예, 아니오)

3. 신청일 현재 파산, 워크아웃, 기업 및 대표(이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가?

(예, 아니오)

20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한성대학교 총장 귀하

「중소기업 계약학과」 3자 계약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 “참여학생”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 “참여학생”이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지침 준수)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 “참여학생”은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 (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제3조(등록금 납부) “참여기업 대표”와 “참여학생”은 아래 등록금 부담비율에 따라 산출된 등록금 부담금액을 “주관대학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

등록금 부담비율 (100%)	정부보조비율 %	민간부담비율	
		참여기업 부담비율 %	참여학생 부담비율 %

제4조(의무근무) “참여학생”은 졸업일로부터 1년 이상 “참여기업”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며, 의무근무 기간은 “참여기업 대표”와 “참여학생” 간 협의에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참여학생”의 졸업 후 의무근무 기간 : 1년 + ____년

제5조(지도·감독) “주관대학의 장”은 운영지침에 따라 학과를 운영해야 하며, “참여학생”이 원활히 학과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성실히 수행한다.

제6조(학위과정지원) “참여기업 대표”는 “참여학생”이 학위과정을 원활히 이수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참여학생”이 학위과정 도중에 퇴직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주관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고지의무) 참여학생은 퇴직 등 참여기업에서의 근무상황이 바뀌었을 경우 지체 없이 주관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알리지 않았을 경우 주관대학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참여학생을 제재할 수 있다.

제8조(등록금 반환) “참여학생”은 자퇴, 제적, 퇴사 등으로 운영지침 제22조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해야 할 경우 “주관대학의 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받은 정부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9조(상호협력)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 및 “참여학생”은 다음과 같이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협력해야 한다.

- 가. 산업교육 추진 및 산학협력 촉진
- 나. 교육과정 및 교재의 공동개발 추진 및 참여
- 다. 참여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과제의 발굴과 교수에 의한 위탁연구 또는 산업체 임직원이나 연구원과의 공동연구의 추진
- 라. 학생의 현장실습 및 취업의 추진
- 마. 교육용 실험실습 시설의 공동 활용 및 교육용 기자재 기증
- 바. 학생생활지도 및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한 협력
- 사.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
- 아. 기타 계약학과 개설 및 운영관련 사항

제10조(비밀유지)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 “참여학생”은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참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서는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와 “참여학생”이 각 1부씩 보관하고, 계약서의 효력은 계약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한 날부터 “참여학생”의 의무근무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유효하다.

20 년 월 일

붙임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주관대학의 장”	한 성 대 학 교	총 장	이 창 원	(서 명)
“참여기업 대표”	○ ○ ○ (주)	대 표	○ ○ ○	(서 명)
“참여학생”	○ ○ ○ (주)		○ ○ ○	(서 명)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대학교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과 관련한 학생선발 및 사업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사무실 전화, 소속, E-mail, 직위, 휴대전화, 학력)

보유 · 이용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협약 종료일 후에는 향후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의 이력관리만을 위하여 보유 · 이용되며 기간은 3년입니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지원사업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고유식별정보	생년월일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전담기관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관리·운영, 관련 자료 활용, 정책자료 활용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및 학번, 출석 등 학적사항 전반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 정보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3년간 보유·이용되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 시 본 지원사업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고유식별정보	생년월일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정부 보조금 지원 비율 상향 대상 여부 확인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 보조금의 지원 비율을 5% 상향한다. 단,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 보조금의 지원 비율을 10% 상향한다.

1. 매학기 개시일 기준 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 포함)에 가입한 근로자
2. 편입학일 기준 3년 이내 중소기업 특성화고 취업(산학)맞춤반 채용협약에 의하여 채용된 근로자
3. 편입학일 기준 3년 이내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완료 과제에 참여한 근로자
4. 계약학과 학위 과정을 졸업하고 상급 학위 과정으로 진학하는 근로자
5.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혁신 선도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아래의 표를 확인하여 해당사항이 있을 시 표시 후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

순번	보조금 지원비율 상향 대상	해당 사항에 표시
1	매학기 개시일 기준 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 포함)에 가입한 근로자	
2	편입학일 기준 3년 이내 중소기업 특성화고 취업(산학)맞춤반 채용협약에 의하여 채용된 근로자	
3	편입학일 기준 3년 이내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완료 과제에 참여한 근로자	
4	계약학과 학위 과정을 졸업하고 상급학위 과정으로 진학하는 근로자	
5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혁신 선도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 첨부 : 해당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지원자 :

(인)

【우선 선발 대상 여부 확인표】

<p>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 제 15조 4항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선발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마이스터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 2.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제10조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대학연계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 참여자 또는 “기술사관 육성사업” 참여자 3. 중소기업 5년 이상 근속자 4. 「숙련기술장려법」제20조에 의한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5.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뿌리기업”에 재직 중인 자 6. 청년장병진로도움 지원사업을 통해 취업한 전역 의무복무병 및 단기복무 간부 7.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아래의 표를 확인하여 해당사항이 있을 시 표시 후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

순번	우선 선발 대상	해당 사항에 표시
1	마이스터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	
2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제10조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대학연계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 참여자 또는 “기술사관 육성사업” 참여자	
3	중소기업 5년 이상 근속자	
4	「숙련기술장려법」제20조에 의한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5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뿌리기업”에 재직 중인 자	
6	청년장병진로도움 지원사업을 통해 취업한 전역 의무복무병 및 단기복무 간부	

※ 첨부 : 해당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지원자 :

(인)

학교위치 및 교통 안내



→ 4호선 한성대 입구역

1. 마을버스 : 한성대입구역 2번 출구 → 한성대학교행 마을버스(02번) 이용 5분 거리
2. 도 보 : 한성대입구역 1번, 2번, 3번 출구 → 도보 10분 ~ 15분 거리
3. 스쿨버스 : 한성대입구역 1번 출구 (월~금) 08:00~10:00, 17:00~19:00 수시운행
* 스쿨버스 운행시간은 학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6호선 창신역

창신역 4번 출구 낙산행 마을버스(03번) 이용 5분 거리 [쌍용아파트 입구에서 하차 후 동문으로 진입]

→ 1호선, 4호선 동대문역

동대문역 5번 출구 낙산행 마을버스(03번) 이용 10분 거리 [쌍용아파트 입구에서 하차 후 동문으로 진입]